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1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신무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4월 13일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성립(5건)

▶ 인정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아파트 토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 1,034,786천 원 및 어음할인료 49,971천 원을 미지급한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결과 추가공사비는 당사자간 이미 합의하여 종결된 사항임을 인정하고 피신고인은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49,971천 원을 지급(3. 5.)하여 분쟁이 종료됨.

▶ (주)쥬리아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하도급대금 35,585천 원을 미지급한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결과 하도급대금(35,585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료됨.

▶ (주)은성플랜트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추가공사대금 32,337천 원 및 어음할인료 3,323천 원을 미지급한다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추가공사대금 및 어음할인료를 15,000천 원으로 정산합의하고 지급하여 분쟁이 종료됨.

▶ (주)메트로프로덕트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하도급대금 47,495천 원을 미지급한다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결과 피신고인이 하도급대금(47,495천 원) 미지급을 인정하고 지급하여 분쟁이 종료됨.



▶ 대명종합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발주처의 작업완료확인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부분 하자 보수요청이 계속된다 하여 피신고인이 발주처의 부분 하자 보수요청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하도급대금 35,000천 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조정회의에 양당사자를 출석시켜 분쟁을 조정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쟁의 개요〉

- 피신고인이 기시공(96년 11월)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96. 11월~99. 11월)한 대명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중 일부인 도장공사를 55,000천 원에 신고인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면서 신고인이 2000. 6. 30. 시공완료하고 입주민대표로부터 시공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계약사항)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입주민대표로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금(35,0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 발생.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

-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피신고인의 하자보증(96. 11월~99. 11월)에 의거하여 발생하며 신고인은 동 하자보증과 관련이 없다.
- 피신고인은 동 보수책임 중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신고인에게 시공위탁(2000. 6. 2.)하였으므로 신고인은 동 시공부분에 대하여만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 신고인의 시공부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작업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한 피신고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확정되므로 이후 동 시공에 대한 하자는 별도의 하자보증이행사항으로 처리할 민사사안이므로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할 수 없다.

〈조정결과〉

-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시공내역과는 관계가 없는 공종의 미완공과 검사결과와 서면통지 없이 하자를 이유로 이미 시공 완료한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정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36,700천 원으로 정산합의하고 지급(2000. 4. 13.)하여 분쟁이 종료되어 조정이 성립됨.

◆ 조정종료(취하)

▶ 태림종합건설(주) 등 18개 업체에 대한 분쟁

- 신고인들의 취하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



- 신고취하제도 도입 이후 당사자간의 분쟁은 조정(합의) 단계에서 취하가 되는 사건의 숫자는 증가 되고 상대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는 사건의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취지인 자율조정의 범위를 한층 확대시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보다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시정함으로써 분쟁당사간에 지속적이며 원만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수급사업자들이 법제도상의 절차(일사부재리의 원칙)를 이해하지 못하여 원사업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 또는 서면상의 약속을 믿고 신고를 취하하였다가 원사업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취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조정불성립

- ▶ (주)화림모드OZOC 등 10개 업체에 대한 분쟁은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고, 사건 이첩요구 등의 사유로 조정불성립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 이첩.

◆ 조정불개시

- ▶ (주)성실기계 등 6개 업체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 요건결여 및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불개시 처리함.

원 고 모 집

본 협회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분위기 조성과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 발간하는 월간 「공정경쟁」은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들의 참신하고 의욕적인 글을 모집합니다.
 논문과 기고문은 물론 수필, 소설, 풍트, 만화 등 소재를 불문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 소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의회관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 「공정경쟁」 출판담당자 앞
 전 화 : (02) 7765-8870~2 E-mail : kfca2000@netsgo.com
 PC통신 : kfca2000(천리안)